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9. 6. 25.

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19년 6월 5일
- 나. 제 출 자: 영등포구청장
- 다. 회부일자: 2019년 6월 11일
- 라. 상정일자: 제214회 영등포구의회 2019년도 제1차 정례회
제5차 행정위원회(2019. 6. 19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재정국장 김정수)

가. 제안이유

- 상위법인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, 현행규정 상의 미비점을 정비하여 개선·보완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상위법령 등 관계규정 반영 및 현행규정 상 미비점 정비
 -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한 사항 규정 신설(안 제1조의2)
 -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3조의3)
 - 상위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 수정(안 제4조)
 - 상위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 공개 등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6조)
 - 건물대부료 산정방식을 「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」에 따라 현행에 맞게 개정(안 제29조)
-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한 경우와 자활기업, 마을기업이 공유재산 대부 신청 시 대부료의

50/100까지 감경할 수 있는 조항 신설(안 제30조제5항)

○ 그 밖에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용어 및 문장 정비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임경태)

○ 본 조례안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그 밖에 법령 인용 조항, 상위법령과의 체계정당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,

○ 본 안건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음.

- 첫째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('18.12.7.)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음.
- 둘째, 상위법령과 현실에 맞게 조문을 정비함.

○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개정은

- 공유재산의 대부계약 시 대부료 감경조항을 신설하였음.(안 제30조제5항)
-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와 사회적기업 등이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등 그 대부료를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함.

○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('18.12.7.) 개정은

- 건물대부료 산정방식을 건물사용면적 비율별 안분 배분방법으로 상위규정에 맞게 공유재산 관련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하였음.(안 제29조)

○ 상위법령과의 체계정당성 확보를 위한 조문 정비 및 현실에 맞게 보완한 사항은

- 공유재산의 관리·처분에 관한 사항은 본 조례가 우선하도록 하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조문을 신설하였음.(안 제1조의2)
- 공유재산 심의회의 운영사항 중 심의회 심사대상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.(안 제4조)
-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.(안 제6조)
-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조문을 예산의결 전까지 수립하도록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함.(안 제11조)
- 대부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대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.(안 제24조)

○ 검토결과,

- 법령 상호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도록 상위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또한 현실에 부응하여 국민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적합한 개정으로 사료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106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: 2019. 6.

제 출 자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상위법인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,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정비하여 개선·보완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상위법령 등 관계규정 반영 및 현행규정 상 미비점 정비

- 1)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한 사항 규정 신설(안 제1조의2)
- 2)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3조의3)
- 3) 상위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 수정(안 제4조)
- 4) 상위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 공개 등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6조)
- 5) 건물대부료 산정방식을 위한 「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」에 따라 현행에 맞게 개정(안 제29조)

나.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한 경우와 자활기업, 마을기업이 공유재산 대부 신청 시 대부료의 50/100까지 감경할 수 있는 조항 신설(안 제30조제5항)

다. 그 밖에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용어 및 문장 정비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없음

다. 협의사항

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
2) 부패영향평가 결과: 개선의견 반영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의 제척·
기피·회피 규정 신설

3) 인권영향평가·성별영향분석평가: 원안동의

라. 입법예고(2019. 5. 2. ~ 5. 22./20일간) 결과: 의견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조의2(다른 조례와의 관계)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·처분에 관하여는 다른
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제3항 중 “**사고가 있을 때**”을 “**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**”로 한다.

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3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
1.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
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
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
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제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영 제7조7항에 따른 기준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

각하는 경우 매각가격의 사정

제4조제1항제3호 중 “**구유재산**”을 “**행정재산**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 변경 또는 용도 폐지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제4조제2항제2호 중 “**미달하는**”을 “**미치지 못하는**”으로 한다.

제4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

제6조의 제목 “(**재산의 증감 및 현황**)”을 “(**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**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구청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,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, 그 밖에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서 발행하는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한다.

제6조제3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**영 제52조**”를 “**영 제52조제2항**”으로, “**양식에 관한**”을 “**서식 등의 필요한**”로 한다.

제8조 중 “**산재되어**”를 “**흩어져**”로 한다.

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구청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(이하 “구의회”라 한다)에서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취소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제12조제2항 중 “**규칙이**”를 “**규칙에서**”로 한다.

제18조제2항제2호 중 “**초래할**”을 “**끼칠**”로 한다.

제20조 중 “**비치하고**”를 “**갖추어 두고**”로 한다.

제21조제3항 전단 중 “**전대하는**”을 “**다시 빌려주는**”으로 한다.

제2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,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해지하는 경우에는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25조 중 “제8항”을 “제5항”으로 한다.

제29조제1항 중 “건물평가액 및”을 “건물평가액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제1항의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면적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의 평가액을 계산한다.

1. 건물면적 :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+ 해당 건물의 공용면적 합계 × (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÷ 해당 건물의 전용면적 합계)

2. 부지면적 : 대부 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 + 해당 부지의 공용면적 합계 × [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(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계) ÷ 해당 건물의 연면적]

제2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3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17조제7항제1호 및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대부료의 100분의 50이내로 감경할 수 있다.

1. 구청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대부하는 경우

2.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에 대부하는 경우

가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

나.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

제31조제3항 중 “서울특별시영등포구”를 “구”로, “상당하는”을 “상응하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“시금고”를 “구금고”로 한다.

제32조 중 “영 제34조”를 “영 제16조 및 제34조”로 한다

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초과하는”을 “넘는”으로 한다.

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명기”를 “명확하게 기록”으로 한다.

제38조제4호 본문 중 “미달하는”을 “미치지 못하는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단서 중 “초과하는”을 “넘는”으로 한다.

제5장제3절의 제목 “신탁 및 교환”을 “신탁”으로 한다.

제39조의2를 삭제한다.

제56조 중 “비치하고”를 “갖추어 두고”로 한다.

제64조 중 “규칙이”를 “규칙에서”로 한다.

제67조제3항 및 제4항 중 “규칙이”를 각각 “규칙에서”로 한다.

제70조제6호 중 “불분명”을 “분명하지 아니”로 한다.

제74조제1항 중 “규칙이”를 “규칙에서”로 한다.

제78조제3항 중 “기입하여”를 “기록하여”로 한다.

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규칙이”를 “규칙에서”로, “비치하고”를 “갖추어 두고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고무인”을 “고무도장”으로 한다.

제84조제2항 중 “규칙이”를 “규칙에서”로 한다.

제85조제1항 중 “규칙이”를 “규칙에서”로 한다.

제87조 중 “기입”을 “기록”으로 한다.

제90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규칙이”를 각각 “규칙에서”로 한다.

제90조의2제2항 중 “규칙이”를 “규칙에서”로 한다.

제91조제2항 중 “규칙이”를 “규칙에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 제3조(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) ① · ② (생 략) 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총괄 및 대표 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 고 위원장이 <u>사고가 있을 때에</u> 그 직무를 대행한다. ④ ~ ⑧ 삭 제 ⑨ ~ ⑪ (생 략) <u><신 설></u>	<u>제1조의2(다른 조례와의 관계) 공유재 산 및 물품의 관리·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u> 제3조(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<u>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을때에</u>----- -----. ⑨ ~ ⑪ (현행과 같음) <u>제3조의3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</u> <u>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 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</u> <u>1.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 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 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</u> <u>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</u>

현행	개정안
제4조(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)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1. (생략) 2. <u>수익계약에 의한 재산의 매각가격</u> <u>사정</u>	3. <u>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</u> 4. <u>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</u>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 제4조(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) ①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영 제7조7항에 따른 기준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재산을 수익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격의 <u>사정</u>

현행	개정안
3. <u>공유재산</u>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. (생략)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 <후단 신설> 1. (생략) 2. 「건축법」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분할면적에 <u>미달하는</u> 토지 3. (생략) 4. <u>330제곱미터 이하 토지(해당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)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</u> 제6조(재산의 증감 및 현황) <신설> <신설>	3. <u>행정재산</u>----- ----- ----- 4.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. <u>다만,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 폐지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.</u>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- <u>미치지 못하는</u> ----- 3. (현행과 같음) 4. 「<u>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</u>」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제6조(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) ① <u>구청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,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, 그 밖에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</u>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서 발행하는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한다.

현행	개정안
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 ② (생략) 제8조(재산의 집단화) <u>산재되어</u>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집단화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. 제11조(공유재산 관리계획)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<u>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(이하 “구의회”라 한다)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·처분하여야 한다. 다만,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(취소포함)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구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.</u> ② (생략) 제12조(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) ① (생략)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<u>규칙이</u>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관리총괄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.	③ 영 제52조제2항----- ----- -----<u>서식 등의 필요</u>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 제8조(재산의 집단화) <u>흩어져</u> ----- ----- ----- -----. 제11조(공유재산 관리계획)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<u>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(이하 “구의회”라 한다)에서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취소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</u> ② (현행과 같음) 제12조(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<u>규칙에서</u> ----- ----- -----.

현행	개정안
제18조(사용·수익허가의 제한) ① (생략)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·수익허가를 해서는 아니 된다. 1. (생략) 2.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	제18조(사용·수익허가의 제한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- ----- - <u>끼칠</u> -----
제20조(사용·수익 허가부의 비치)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 허가부를 <u>비치하고</u> 기록·보존하여야 하며,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.	제20조(사용·수익 허가부의 비치) -- ----- ----- <u>갖추어 두고</u> ---- ----- -----.
제21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 ①·② (생략)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·수익허가 받은 재산의 사용료를 납부하고, 제3자에게 <u>전대하는</u> 경우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	제21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 <u>다시 빌려주는</u> ----- ----- ----- -. ----- -----.

현 행	개 정 안
한다. ④ ~ ⑥ (생략) 제24조(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) <u><신설></u> ① (생략) ② (생략) 제25조(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) 이 조 례에서의 외국인투자기업이란 「외 국인투자 촉진법」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,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 항에서 정한 기업 등을 말한다. 제29조(건물대부료 산출기준) ① 건물 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 은 <u>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 산하여 결정한다.</u> ② <u>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 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 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</u>	④ ~ ⑥ (현행과 같음) 제24조(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) ① <u>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, 관리를 태만 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 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 으며, 해지하는 경우에는 재산의 환 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.</u> ② (현행 제1항과 같음) 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 제25조(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) ---- ----- ----- ----- -제5항-----. 제29조(건물대부료 산출기준) ① ---- ----- <u>건물평가액과</u> ----- -----. ② <u>제1항의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 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면적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</u>

현행	개정안
<u>결정한다. 다만,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「건축법」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(이하 같다)하여 평가하여야 한다.</u> <u>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.</u> <u>1. 지상 2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</u> 가.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.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<u>2. 지상 3층 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</u> 가.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.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.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.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	<u>의 평가액을 계산한다.</u> <u>1. 건물면적 :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+ 해당 건물의 공용면적 합계 × (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÷ 해당 건물의 전용면적 합계)</u> <u>2. 부지면적 : 대부 받은 자의 부지 전용면적 + 해당 부지의 공용면적 합계 × [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 (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계) ÷ 해당 건물의 연면적]</u> <u><삭 제></u>

현행	개정안
3. <u>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</u> <u>는 부지평가액 전액</u> 4. <u>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</u> <u>하는 경우</u> 가. <u>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</u> <u>의 1</u> 나. <u>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</u> <u>의 1</u> 다. <u>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</u> <u>5분의 1</u> 5. <u>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</u> <u>하는 경우</u> 가. <u>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</u> <u>의 1</u> 나. <u>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</u> <u>의 1</u> 다. <u>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</u> <u>4분의 1</u> ④ <u>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</u> <u>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</u> <u>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</u> <u>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자와 공용</u> <u>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</u> <u>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</u> <u>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</u>	<삭 제>

현행	개정안
<u>면적 비율 30퍼센트를 적용한다.{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자와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(건물의 경우는 대부받은 자가 다른 자와 공용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)}*{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/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(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)}</u> <u>⑤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.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구체적인 증거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로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.</u> <u>⑥ 영등포구가 건립한 지식산업센터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각 공장 면적에 비례한 부지평가액을 해당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.</u> <u>⑦ 2층 이상 또는 지하2층 이하에 있는 상업용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제1항부터 제</u>	<u><삭 제></u> <u><삭 제></u> <u><삭 제></u>

현행	개정안
<u>6항까지를 준용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, 주거용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총 대지면적을 사용면적(공용면적을 포함한다)으로 나눈 면적비율에 따라 산출한다.</u> 제30조(대부료의 감면) ① ~ ④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30조(대부료의 감면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<u>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17조제7항제1호 및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대부료의 100분의 50이내로 감경할 수 있다.</u> 1. <u>구청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대부하는 경우</u> 2. <u>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에 대부하는 경우</u> 가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나.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

현행	개정안
제31조(전세금 납부방법의 대부) ① · ② (생략)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세금은 <u>서울특별시영등포구금고은행</u>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영 제31조에 따른 연간 대부료에 <u>상당하는</u> 금액이 되도록 역산하여 산출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. ④ · ⑤ · ⑥ (생략) 1. (생략) 2. 전세자는 제1호에 따라 정산금액을 전세금 반환일까지 <u>시금고</u>에 납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기간 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세금에서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다. 제32조(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)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대부기간 중 전년도에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, 그 증가한 부분 중 100분의 5를 초과한 증가분에 대해서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.	<u>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</u> 제31조(전세금 납부방법의 대부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<u>구</u> ----- ----- ----- ----- <u>상응하는</u> ----- ----- -----. ④ · ⑤ · ⑥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- <u>구금고</u> ----- ----- ----- -----. 제32조(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) 영 제16조 및 제34조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현행	개정안
제33조(대부료의 납기) ① (생략)	제33조(대부료의 납기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<u>초과하는</u>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납부할 수 있다.	② ----- ----- <u>넘는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1. 2. (생략)	1. 2. (현행과 같음)
③ ④ (생략)	③ ④ (현행과 같음)
제34조(대부정리부의 비치) ① (생략)	제34조(대부정리부의 비치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의 대부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<u>명기</u> 하여야 한다.	② ----- ----- <u>명확하게 기록</u> ----- -----.
1. ~ 10. (생략)	1. ~ 10. (현행과 같음)
제38조(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)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	제38조(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)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일단의 토지면적이 특별시·광역시 및 시지역에서 1,500제곱미터 이하, 그 밖의 지역에서는 3,000제곱미터 이하로서 2012년 12월 31	4. ----- ----- ----- -----.

현 행	개 정 안
일 이전부터 영등포구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같은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(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토지 면적에 <u>미달하는</u> 경우에는 같은 규모의 면적범위 내의 토지 포함)를 같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. 다만, 다수의 영등포구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영등포구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1,500제곱미터 또는 3,000제곱미터를 <u>초과하는</u>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정하여 위 매각범위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다. 5. ~ 10. (생략) 제3절 <u>신탁 및 교환</u> <u>제39조의2(교환차금의 납부)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의 납부는 제17조의2를 준용한다.</u> 제56조(비품의 관리)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<u>비치하고</u> 제54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장식물을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미치지 못하는</u>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 <u>넘는</u> ----- ----- -----. 5. ~ 10. (현행과 같음) 제3절 <u>신탁</u> <u><삭 제></u> 제56조(비품의 관리) ----- ----- <u>갖추어 두고</u> ----- -----

현행	개정안
이에 등재·관리하여야 한다. 제64조(물품매입 등의 요구) 관리관은 물품을 매입·수리 또는 제조가 필요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<u>규칙</u>이 정하는 물품매입(수리·제조) 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. 제67조(기증품의 취득) ①·② (생략) ③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공무원(분임물품출납공무원)이 물품관리관에게 <u>규칙</u>의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.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<u>규칙</u>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제70조(물품의 가격)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. 1. ~ 5. (생략) 6.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되지	-----. 제64조(물품매입 등의 요구) ----- ----- ----- ----- <u>규칙</u>에서 ----- -----. 제67조(기증품의 취득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<u>규칙</u>에서 ----- ----- -----. ④ ----- ----- ----- <u>규칙</u>에서 ----- -----. 제70조(물품의 가격) ----- --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-----

현행	개정안
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<u>불분명한</u> 것은 전적가격 7. (생략) 제74조(불용품의 폐기) ① 물품관리관은 제7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<u>규칙이</u> 정하는 불용품폐기(해체)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(해체)하여야 한다. ②·③ (생략) 제78조(물품의 망실·훼손보고) ①·② (생략) 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·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<u>기입하여</u>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④ (생략) 제80조(물품출납원의 장부) ① 물품출납원은 <u>규칙이</u>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의 장부를 <u>비치하고</u> 정리하여야 한다. 1. ~ 4. (생략) 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,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, 제65조제1항에 따른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비	----- <u>분명하지</u> <u>아니</u>----- 7. (현행과 같음) 제74조(불용품의 폐기) ① ----- ----- ----- <u>규칙에서</u> ----- ----- -----. ②·③ (현행과 같음) 제78조(물품의 망실·훼손보고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 <u>기록하여</u> ----- -----. ④ (현행과 같음) 제80조(물품출납원의 장부) ① ----- ----- <u>규칙에서</u> ----- ----- <u>갖추어 두고</u> 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

현행	개정안
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"정수물품"의 <u>고무인</u>을 찍어야 한다. ③·④ (생략) 제84조(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) ① (생략) ② 물품의 매입·수리·수선·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<u>규칙</u>이 정하는 물품검사조서에 따라 검사 또는 검수한다. ③ (생략) 제85조(물품검사서) ① 검사원은 제84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경우에는 <u>규칙</u>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되 1통은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구청장 또는 구의회사무국·보건소·동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②·③ (생략) 제87조(인계의 절차) 제86조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전일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·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.	----- <u>고무도장</u>-----. ③·④ (현행과 같음) 제84조(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<u>규칙에서</u> ----- -----. ③ (현행과 같음) 제85조(물품검사서) ① ----- ----- <u>규칙에서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②·③ (현행과 같음) 제87조(인계의 절차) ----- ----- ----- <u>기록</u>----- ----- -----.

현행	개정안
제90조(변상금의 부과) ① 영 제81조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·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<u>규칙</u> 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.	제90조(변상금의 부과) ① ----- ----- ----- <u>규칙</u> <u>에서</u> ----- -----.
② 제1항의 변상금 부과·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<u>규칙</u> 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.	② ----- ----- <u>규칙에서</u> ----- ----- -----.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90조의2(변상금 징수의 특례) ① (생략)	제90조의2(변상금 징수의 특례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변상금 징수유예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<u>규칙</u> 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	② ----- ----- <u>규칙에서</u> ----- ----- -----.
제91조(변상금의 분할 납부) ① (생략)	제91조(변상금의 분할 납부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가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를 하려면 <u>규칙</u> 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<u>규칙에서</u> ----- ----- -----.